

의안번호	제 352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허창원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20년 1월 6일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2
----------	-----

발의연월일 : 2020년 1월 6일

발 의 자 : 허창원, 전원표, 연철흠,
송미애, 이옥규, 박상돈

1. 개정이유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주거복지 증진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주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 구체화 (안 제5조)
 -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실태, 시설개선 등 주거환경개선,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 등 기본계획 수립에서 반영해야 할 사항 구체화
- 명칭변경 (안 제6조)
 - 주거복지 상담사 → 주거복지사
- 주거복지증진 사업지원 신설(안 제7조)
 -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을 사업을 지원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
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
5.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6.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 소관 국 변경 (안 제20조)

- 보건복지국 → 문화체육관광국

○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자구 개정

- 기여하는 → 이바지하는, 수립한다→세운다, 부의하고→회의에 부치고, 통지하여야→알려야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관계없음.

라. 입법예고 : 2019.12. 26 ~ 12.31. (5일)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를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기여하는”을 “이바지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한다”를 “세운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법령”을 “필요한 비용은 관련 법령”으로 한다.

2.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실태
3. 시설개선 등 주거환경개선
4.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
5. 입주자의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6.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8.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제6조의 제목 “(주거복지 상담사)”를 “(주거복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거복지 상담사”를 “주거복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거복지상담사”를 “주거복지사”로 한다.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주거복지증진 사업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의 사업과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
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
5.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6.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제8조(중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도지사는 시장·군

수가”로, “**위하여**”를 “**위하여 추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의 사업과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제11조(중전의 제10조)제1항 중 “**수립하고**”를 “**세우고**”로 한다.

제13조 앞에 “**제3장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제3장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삽입한다.

제15조(중전의 제14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6조)제2호 중 “**부적합하다고**”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8조)제2항 중 “**개최하며**”를 “**열며**”로, “**개최한다**”를 “**연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9조) 중 “**보건복지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20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u></p>	<p><u>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이바지하는</u> ----- -----.</p>
<p>제5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p>	<p>제5조(계획의 수립) ① ----- ----- ----- ----- ----- ----- ----- <u>세운다.</u></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② ----- -----.</p>
<p>1. (생 략)</p>	<p>1. (현행과 같음)</p>
<p>2. <u>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u></p>	<p>2. <u>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실태</u></p>

3.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4. (생략)

③ (생략)

④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제6조(주거복지 상담사)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영구 임대주택에 주거복지 상담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거복지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략)

<신 설>

3. 시설개선 등 주거환경개선

4.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

5. 입주자의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6.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8.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9.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필요한 비용은 관련 법령-----
-----.

제6조(주거복지사) ① -----

--- 주거복지사-----
-----.

② 주거복지사-----
-----.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주거복지증진 사업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의 사업과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
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
5.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사업
6.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제7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도
지사는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
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
장 운영 등

제8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도
지사는 시장·군수가 -----
----- 위하여 추진하
는 -----.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
의 사업과 비슷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2.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에 대한 상담

3. (생략)

제8조·제9조 (생략)

제10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임차인대표자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제12조 (생략)

제3장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제13조 (생략)

<신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현행과 같음)

제9조·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제11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① -----

----- 세우고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제13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삭제>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3장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제15조(위원회의 기능) -----

-----.

1. ~ 3. (현행과 같음)

4. -----
----- 회의에 부치는 -----

제15조 (생략)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
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생략)

제17조 (생략)

제18조(회의) ① (생략)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생략)
-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생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

-----.

1. (현행과 같음)
2. -----
----- 적합하지 않다고

3. (현행과 같음)

제1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열며-----

----- 연다.

- ③ (현행과 같음)
- ④ -----

----- 알려야 -----.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보건복지국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20조(협조요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요청에 부응해야 한다.

제21조 ~ 제23조 (생략)

제20조(간사) -----

----- 문화체육관광국 -----
-----.

제21조(협조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없으면 -----
-----.

제22조 ~ 제24조 (현행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

관련법령 발취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